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4. 20.(목) 09:3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1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17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유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18조제4항이 개정되었으며,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허가·승인·등록 취소 시 방송 유지를 위한 절차만 규율하고 있는데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거부 시에도 방송 유지 절차를 동일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방송법」 일부개정 경과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21일에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금년도 2월 20일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방송법 제18조제4항 개정에 따른 방송 유지명령 대상사업자 변경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조항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방송 유지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합니다. 기존에 방송 유지명령 대상이던 허가·승인·등록 취소 사업자 외에도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령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4월부터 6월 초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에 규제심사, 6월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방송의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사후 조치에 관한 것을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대하는 안입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안건 나>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단말기 출고가의 공시기준과 방법 등을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1일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이라는 정책과제가 선정되었으며, 8월 25일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보고 드리는 출고가 비교 공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작년 말 관련 예산을 수립·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가격비교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이통사, 제조사 등 14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4회에 걸쳐 단말기 출고가의 비교 공시 기준 및 방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비교대상 국가입니다. 단말기의 가격 자료 수집이 가능한 OECD 회원국 중에서 국가 규모나 소득수준, 시장규모, 즉 1인당 GDP, 인구수, ICT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개국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외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을 비교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15개국, 중국 1개국 총 17개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교대상 단말기 관련 사항입니다. 출고가가 80만원 이상인 고가 단말기 및 작년도의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에서 비교대상 단말기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출시된 지 2년 24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나 해외에서 출시가 되지 않아서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단말기의 스펙이 거의 유사하고 화면크기의 차이만 있는 모델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단말기만 선정하며, 동일 기종에서 메모리용량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단말기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공시할 단말기는 고가 단말기 8개 기종, 중저가 단말기 3개 기종 총 11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대상 가격 및 사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는 1위 및 2위 사업자의 출고가,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의 가격 2가지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항입니다. 국내·국외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주별로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즉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캐나다는 온타리오주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조사 시점의 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원화로 변경 환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시 방법입니다. 매월 둘째 주에 가격정보를 조사하고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하며,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 24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출시 후 24개월간 공시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의 접근성, 정보 활용도 등을 계획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즉 와이즈유저에 공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즉 스마트초이스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연동하고자 합니다. 화면 구성과 관련하여 온라인 제공 화면의 첫 페이지는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의 취지, 비교 기준 설명, 월별 요약자료를 제공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조사, 단말기, 국가 등 이용자가 기준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엑셀로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매월 시행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정하고 있기로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5월 2일부터 비교공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가나 단말기 기준, 비교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 받으신 대로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의 국내·외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 공시함으로써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제4기 위원회에서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그리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의 비교공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상한제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김석진 위원님과 함께 그 KAIT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살펴봤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와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어야 정책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쉬움이 큼니다. 그렇더라도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실행 가능한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제도라도 먼저 실시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출고가 비교공시의 정책적 효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애플 등 국내·외 주요 휴대폰 출고가를 누적적으로 조사해서 매달 공개하면 국내 제조사들은 출고가 비교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독과점 시장구조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가격 시대에서 벗어나 국내·외 시장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교공시제 성공을 위해서는 저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단말기 출고 가격비교 조사가 비교대상 간의 동일한 조건 하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를 통해서 공시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그것을 개선해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긴 하지만 그외에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물 배포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더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정책홍보 예산이 우리 위원회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강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고, 또한 여기에 와 계신 방통위 출입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따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한 것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미주 또는 유럽에 비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단말기 가격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한국은 조금 비싼 편이고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싼 편으로 최초 출고가격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최초 출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고가가 빠르게 인하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하 속도가 약간 늦어진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공시가격 단말기 출고가격이 공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얼마쯤 뒤에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하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저희가 매달 주기로 조사해서 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외국과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전에 외국의 출고가 인하되는 때였는데도 우리나라 출고가가 인하되는 시기와 겹이 있었는데 그런 겹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업자들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사업자들 의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특히 제조사도 그렇고 이통사도 그렇고 이통사 입장에서는 출고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공개되는 항목들을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협의회에서 시민단체나 전문가 분들이 출고가 인하라는 대의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으로 설득해서 동참하기로 양해를 한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자료는 제조사가 바로바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통사나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공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대략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말기 국제 가격 비교하는 것은 진즉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기에 하지 못하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통신비 인하 등 국민 생활비 절감이라는 국정과제 하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단말기 국내 출고가 비교에 대해서 일부 제조사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출고가 단말기 가격을 몰랐느냐?” 이런 냉소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통신사에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통한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국정과제에서 목표로 삼았던 ‘통신비 절감 등 국민 생활비 절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 국내·외 비교 공시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비교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의심받아서 안 되고 논란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협의회 운영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단말기 가격의 국내·외 비교를 통해 출고가 인하도 유도하지만 정작 구매자들, 이용자들의 구매패턴이 달라질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 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해외 단말기를 직구할 것이냐, 어떻게 봅니까?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특히 자급 단말기 가격 부분은 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직구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통신비 부담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통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책이 잘 추진되어야 합니다. 물론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된 적은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자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싼 단말기를 선택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아마 단말기 제조사들이 가격을 정할 때 국내 가격과 국외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저희 공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것은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주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 <보고안건 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한열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법제처의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획 정비 추진 계획” 지난해 8월에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중 해당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행위무능력자, 파산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통위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행위무능력 그리고 파산 등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같은 사유에 따라 처분받은 이력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대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미디어법 제12조제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도 역시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같은 사안으로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허 옥 부위원장

-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면 이런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예.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전체 법체계 자체는 개정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부처도 역시 이런 법들을 같이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해소된 행위무능력자나 파산자에게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안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사회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도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혹시 다른 논의사항이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평소에는 발언을 조금 짧게 합니다만 오늘은 발언을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엄청난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일주일 후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는 또 다른 차원의 회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정상회담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데다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중차대한 시기에 특정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잘 아시는 대로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저지르는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등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댓글과 악의적인 덧씌우기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을 오도하는 해악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대로 불법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세력에 대해서는 의당 사법당국의 수사가 계속 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불법 여론 조작이 가능하도록 느슨하게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대 포털에 대해서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처럼 커진 거대한 포털은 이미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포털들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여론 왜곡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포털들이 더 이상 상업성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불법 여론조작 등을 차단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가짜뉴스 등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본연의 가치대로 신장될 수 있도록 포털 운영에 대해서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보완 장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특히 여론을 조작하거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저희 정책을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번 케이스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정책 또 네이버 등 포털 정책에 대한 새로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인터넷 댓글 조작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저도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댓글이 정치적 목적의 선동, 상대 후보 진영 공격 이런 데에 동원되면서 여론과 민심을 크게 왜곡할 우려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같은 댓글조작으로 인한 여론 왜곡이나 인터넷 역기능 대책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의 자율적인 규제만 맡겨 놓기에는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실효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아이디를 만들고 댓글조작 무더기 여론몰이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또 정보보호에 관한 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글을 비롯한 해외 주요 포털을 보면 뉴스를 볼 때 기사 제목이나 요약만 뜨게 하고 직접 나머지 기사를 보려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들어가야만 기사 전문을 볼 수 있고 댓글도 거기에서 달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아웃링크(outlink)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인링크(inlink)방식입니다. 댓글 피해가 크고 또 여론조작의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사 노출시간이 곧 광고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포털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댓글조작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 대책을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표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선거 당시에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MBC에 보면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이 가동되고 있는데 정상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조작

되어서 보도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어저께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경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MBC 정상화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지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사장으로 교체되고 난 직후부터 가동이 되어서 지난 정권 때 보도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편파 보도 관련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혁명위원회 같은 성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동 방식인데 아무리 과거 적폐를 파헤친다고 하지만 절차와 방식은 민주적인 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인권 유린이나 인권 침해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들여다보면 노조 반대편에 섰던 기자들 보도국에 80여명 됩니다. 현재 마이크를 빼앗기고 전혀 현업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마치 수사기관처럼 문초를 하고 또 모델감을 주고 압박을 해서 한번 불러갔던 기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해고까지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조사자의 개인 휴대폰 통화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압박을 하고, 거의 검찰 특수부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과도한 인권침해 인권유린입니다. 또 정상화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인사발령을 내서 조사실 대기라는 그런 근무 위치까지 지정해 주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바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해고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과거 정권에서 당했던 대로 그대로 양값음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때 인사 불이익보다 더한 양값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MBC 정상화 시키겠다고 하면서 당한 만큼 되갚아 주고 또 이념을 달리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피눈물이 나게 한다면 어찌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MBC 새 사장 취임 이후에 벌써 여러 명의 해고자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간부들에게도 해고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MBC 감사국이 개인 이메일, 직원들 이메일을 불법으로 들여다봤다는 그 경위를 사무처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묻습니다. 방송정책국장, 나와 계시지요?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파업 중인 MBC에 대해서 방문진 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감독권을 발동에 대해서 결국 방문진 이사진을 해임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이런 개인 이메일 사찰은 검사·감독권 발동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방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메일 열람을 당한 대상자들이 사장과 감사등을 상대로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이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문진 이사회도 4월 5일 열람행위의 적법성에 대해서 가부 결론을 내지 않고 법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런 단계에서 방통위가 검사나 감독을 통해서 이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아직은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사무처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당장 검사·감독권 발동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9월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개인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면 이대로 흐지부지 묻혀 버리고 말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신임 사장이 팀장 인사까지 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전임 사장 임명한 간부들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단 보직에서 무조건 뺀다는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KBS 구성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발령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부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새 정부에서 자리를 뺀 일이 공무원 사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영방송에서 반대편에 대해서 그런 가차 없는 응징과 보복이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방통위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못 본 척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강조합니다. 사무처가 경위를 파악해서 인권유린, 그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조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 댓글 관련해서 이 건과 무관하게 여론조작이나 아이디 도용 같은 디지털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의 경우 저희가 연초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건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나와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언론보도만 보고 특정 정치인이 피해자다,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전체회의석상에서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좀 더 팩트 확인당이 되고 종합적으로 수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후속조치로서 어떤 대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성급하게 어떤 것들을 특정해서 단정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상황파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공영방송 내부의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 인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은 “응징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측의 입장이나 사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의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KBS에서 계속 인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방통위가 문제제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임 사장이 인사한 보직자에 대해서 무조건 그 이유로 빼는 것이냐, 전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주재하시면서 폭넓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3기 때 안전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또 문제제기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라 할지라도 발언을 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선배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너무 무제한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의혹제기들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회의 주제를 하시는 위치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면 표철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나름 준비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크로와 같은 수단을 활용한 기기작동을 통한 여론의 조작, 포털에서의 댓글조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안인데 이것이 만약에 기기적 작동에 있어서 더욱 더 증폭되고 만약에 여론이 왜곡되어서 전달된다면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법안 개정과 관련된 금지 사안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관련되어서 이용자정책국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사법 당국의 검토가 별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례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는 별도로 리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아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던 것도 저는 이야기의 비중은 포털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안 가운데 제 출신 사에 대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조금은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임 사장이 기수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전임 사장이 11기였는데 비해서 신임 사장은 16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 기술상 선배 기수가 주요 포스트에 앉기는 여러 가지 어려웠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주요 국장급 보직 가운데는 전임 사장이 보임해 놓은 인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유임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드루킹 사건으로 비롯된 온라인상에서의 여론조작 문제 그리고 그것의 반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

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표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논제를 던져 주셨는데, 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서 특정인이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MBC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야권 이사님들조차도 수사기관에서 이메일 열람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존중해서 아까 김동철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때까지는 지켜 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KBS의 경우도 방금 표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인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한 입장에서 특정한 몇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인사가 보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감독기관으로서 방송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고 어떤 부적절한 일이 또는 방송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책과 관련된 논의로 이어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되거나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은 조금 발언하실 때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사전에 오늘 발언을 길게 한다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에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이 회담은 방송으로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나라 전체가 이미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중대 사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보도전문방송인 YTN이 이렇게 장기간 국민들의 시청권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노사가 공히 지탄을 이제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들이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께 중재를 해 주십사 하는 짐을 지워드린 바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중재에 나셨는데도 YTN이 시급히 시청권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보도전문매체로서 YTN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YTN 노사의 조속한 합의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안정된 조정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오늘 표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YTN 노사 양측에 자극이 되어서 좀 더 빠르고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로 조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빨리 조정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2분 폐회 】